

## 2024년 무안군가족센터 신규직원 채용계획 공고

2024년 무안군가족센터 신규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년 4월 8일  
무안군가족센터장

### 1. 모집분야

모 집 분 야 1	○ 통번역 전담인력(필리핀어) 1명
담 당 업 무	○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(필리핀어) ○ 센터에서 요청하는 업무 등
근 무 형 태	○ 정규직
급 여	○ 2024년 가족센터 인건비 호봉기준표에 의함 ○ 4대보험, 명절수당 연 120%, 특별수당 등
자 격 요 건	<b>공통</b> ▶ 다음 기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○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·번역이 가능한 자 ○ 한국어 능력시험(TOPIK) 기준으로 4급 이상자 * TOPIK IBT 인정
	<b>우대</b> ○ 본국 또는 한국에서 한국어 관련 전공자 ○ 각종 통번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○ 각종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
제 출 서 류	① 응시원서 1부(별지1호) ② 자기소개서 1부(별지2호) ③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(별지3호) ④ 졸업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⑤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⑥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모 집 분 야 2	○ 온가족보듬사업 “보듬매니저” 1명
활 동	○ 온가족보듬사업 “학습정서지원, 생활도움지원, 긴급위기지원”
근 무 형 태	○ 계약직(채용일부터 ~ 2024. 12. 31)
활 동 비	○ 개인수업 1시간 15,000원 ○ 단체수업(2명이상) 1시간 30,000원
자격 요건	<p>공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듬매니저로 활동가능한 건강한 자</li> <li>○ 아동관련 범죄사실이 없는 자,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</li> </ul>
	<p>우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원자격증 소지자, 전직교사,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, 해당분야 관련 학과 전공자,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, 청소년지도사</li> <li>○ 노인요양보호사, 아이돌보미</li> <li>○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 경력자,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의한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</li> </ul>
제 출 서 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응시원서 1부(별지1호)</li> <li>② 자기소개서 1부(별지2호)</li> <li>③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(별지3호)</li> <li>④ 졸업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</li> <li>⑤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</li> <li>⑥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</li> </ul>

모 집 분 야 3	○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1명
활 동	○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육
근 무 형 태	○ 시간강사 : 1회당(20~25분)
강 사 수 당	○ 활동비(회당) 30,000원
응 시 자 격	<p>▶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결혼이민자</li> <li>○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</li> </ul>
제 출 서 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다문화이해강사 지원서(별지1호)</li> <li>② 자기소개서(별지2호)</li> <li>③ 개인정보 및 이용동의서(별지3호)</li> <li>④ 자격증 사본(다문화이해강사 수료증 등)</li> <li>⑤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* 주민등본, 외국인등록증 등</li> <li>⑥ 졸업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</li> <li>⑦ 경력증명서(경력자에 한함)</li> </ul>

## 2. 전형방법

전형구분	전형방법
1차	서류전형(자격 및 경력에 대한 요건 심사)
2차	면접전형 추후공지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합격자 결정	2차 면접전형 최고 득점자

## 3. 일정

- 가) 접수기간 : 2024. 4. 10(수) ~ 2024. 4. 16(화)18: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
- 나)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, 이메일 접수
- 다) 접수처 : 무안군가족센터
  -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11(2층)
  - E-mail : [muan2009@hanmail.net](mailto:muan2009@hanmail.net)

## 4. 기타

- 가)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재공고합니다.
- 나)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다)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- 단, 미 채용자는 본인의 반환 요구서 제출시 반환가능(서식 별첨)
- ※ 「채용절차법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하여 최종 합격 공고 30일 후 파기
- 라) 합격자가 합격 포기 및 결격사유,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차순위 합격자(본인 희망시) 순서로 채용합니다.
- 마) 합격자 발표 및 통지 : 합격자 발표는 가족센터 홈페이지(familynet.or.kr 무안군가족센터) 채용공고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.
- 바) 문의 : 061-452-1813(채용 담당자)

<별지 1호>

# 응시원서

접수번호		지원분야	
------	--	------	--

성명	한글	한자	영문
생년월일			
취업가능 연령	법정 취업가능연령(만 19세) 이상입니까? (해당되는 곳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하시오.)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	

주소 (우편번호) (현거주지)				
연락처	전화번호	전화		휴대전화
	전자우편			

직무관련 학교교육	대학교 이하	전공	부전공	졸업/재학/수료
	대학원(석사,박사)	전공	부전공	졸업/재학/수료

직무관련 총 경력 (년 개월)	근무처	직위	담당 업무(직무내용)	근무기간(연, 월)
				년 월 ~ 년 월
				년 월 ~ 년 월

자격증 및 특기사항	관련 자격증	자격사항	발행처	취득일
				(년 월 취득)
				(년 월 취득)

기타 취업지원 대상 여부	구분	해당 여부
	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	
	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	
	여성가장 * 여성 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	
	만 55세 이상 고령자	
	장애인	
	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	

본인은 무안군가족센터 직원공채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.

2024년 월 일 성명

(인)

<별지 2호>

## 자 기 소 개 서

※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(1~2매 이내)

- 자기소개, 지원사유, 경력 등을 작성

작성자 :

<별지 3호>

## 〈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〉

무안군가족센터는 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목적
  -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
2. 개인정보 수집항목
  - 수집항목 : 성명, 주소, 연락처, 학력·경력·자격사항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 - 채용심사 기간에만 보유, 이용, 보관됩니다.
4.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
  -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.
  -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( ), 동의하지 않음( )

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( ), 동의하지 않음( )

2024년 월 일

성명 : (서명)

무안군가족센터 귀하

※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

<별첨>

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무안군수 귀하

### 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